

2018학년도 입학전형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보고서

1. 2018학년도 입학전형 선행학습영향평가

가. 입학전형선행학습영향평가 개요

- 공교육정상화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였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업무 이행 필요

나. 실시 근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

· 공교육정상화법 관련 내용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① 대학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제10조의2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③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관련 내용

제5조(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등(이하“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대학등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2. 2018학년도 입학전형 개요

가. 수시모집

전 형 별	학 과	성 적 반 영 비 율
[정원내 전형] -일반고(인문계) -특성화고(전문계) -대학자체기준	전체학과 (아래학과 제외)	학생부 성적 100점 (교과성적 80점+출석성적 20점) + 부가점수 ※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응급구조과, 임상병리과는 부가점수 반영하지 않음
	항공서비스과	학생부 성적 80점 (교과성적 60점+출석성적 20점) + 면접고사 20점 + 부가점수

3. 영향평가 결과

가. 평가개요

- 1) 회의일시 : 2018년 3월 26일(월)
- 2) 참석위원 : 입학홍보처장, 교내위원 5명, 외부위원(동의공업고등학교) 1명 총 7명
- 3) 평가방법 : 선행학습 영향평가 취지를 고려한 대학별 고사의 적절성 검토
 - 대학별 면접고사 실시에 따른 질문문항, 평가표 및 평가체크리스트 등의 관련 자료를 근거로 영향평가의 취지에 맞는 적절성 여부에 대해 심의함.

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여부 분석

1) 대학별 고사 운영 현황

구 분	운영여부	선발인원	영향평가 대상여부	영향평가 제외사유
논 술	×	-	×	미실시
적성검사	×	-	×	미실시
인성검사	×	-	×	미실시
실기고사	×	-	×	영향평가 제외
면접고사	○	33	○	-

2)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에 대한 대학의 분석

- (1) 대상요소 : 면접
- (2) 대상요소의 활용 : 질의응답을 통하여 학생의 전공에 대한 인지력, 노력 및 학업계획과 전반적인 태도 등을 평가
 - ① 수시모집 활용
 - 정원내 면접대상학과 : 항공서비스과만 실시하며, 교과성적 80점 면접고사 20점 반영함.
- (3) 분석내용

본 대학의 대학별 고사 중 면접고사 실시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성 및 적성과 자기소개에 대한 면접실시

4. 교육과정내 출제여부 분석

가. 면접고사 실시방법

1) 방법

우리대학의 면접고사는 학생부에 기재된 사항이나 교과지식과 관련이 없는 기본소양, 전공인지도, 학업계획, 의사표현 등을 중심으로 면접위원 3명이 모집전형별로 집단면접을 실시하며, 평균값을 채택

2) 면접평가 기준 및 배점(면접대상학과 모두 적용)

구 분	반영비율	기본소양	전공인지도	학업계획	기타(의사표현)
면접 배점표	20%	5점	5점	5점	5점

나. 평가결과

- 우리대학은 공교육정상화법 취지에 부합하는 고교 교과위주의 문제 및 질문을 제시하거나 선행학습이 유발하는 평가내용은 없으며,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면 누구나 응할 수 있는 수준의 면접고사를 통해 우리대학의 교육 목표와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는데 활용

5.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계획

가. 2019학년도

평가결과 선행학습 유발과 관련한 내용이 없음

나. 2020학년도 이후

향후 선행학습 유발을 위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지양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해 별도의 학습이 필요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 및 인성을 중요시하는 우리대학의 교육목적인 직업교육에 부흥하는 입학전형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임.